

2026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엠북 해사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4시간 40분 완성

도서명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ISBN : 979-11-7393-081-2

발간일 : 2025-09-17

형식 : PDF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5,000원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목차]

제1편 선박안전법(p3)

제2편 해운법(p49)

제3편 해사안전기본법(p92)

제4편 해상교통안전법(p105)

제5편 해양사고심판법(p179~216)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제1편 선박안전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선박의 검사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4장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등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7장 삭제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9장 항만국통제

제10장 특별검사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은 대한민국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서등은 선박검사증서등(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

물건등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선박의 감항성 유지,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2. 정의

1) **선박**은 수상/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될 수 있는 것(선외기 장착한 것

포함)과 다음의 부유식 해상구조물

가) 이동식 시추선

- 액체나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유황, 소금 등 해저 자원 채취/탐사(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

나)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명 이상 수용(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은 제외)

다) 다음을 산적해 저장

- 기름, 폐기물
- 하수, 분뇨 및 하수도, 공공하수도,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 관련 발생하는 준설물질, 오니류(오염 침전물류)
- 폐수, 가축분뇨
- 선박/해양시설에서 사람의 일상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분뇨

라) 위험물을 산적해 저장

2) 선박시설은 선박에 설치되었거나 될 다음 설비

-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조타설비
- 계선설비(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둠)
- 양묘설비(닷을 감아올림)
- 구멍/소방/거주/위생/항해 설비
- 적부설비(위험물,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해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내 배치)
- 하역/작업/전기/원자력/컨테이너 설비
- 승강/냉동/냉장/수산물처리가공 설비
- 항만건설장비
- 선박 종류/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장관 인정 특수 설비

3) 선박용물건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장관 고시 물건

4) 기관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와 이들의 제어장치

5) 선외기는 선박 선체 외부에 붙일 수 있는 추진기관

- 선체로부터 간단한 조작에 의해 쉽게 떼냄

6)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

- 일정한 기상,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

7)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

- 여객/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

8) 복원성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9) 여객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제외

가) 선원

나) 1세 미만 유아

다) 일시 승선한 다음 사람

a) 선원과 동승해 생활하는 선원 가족

b)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포함), 선박정비, 화물관리, 안전관리 등 해당 선박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 소속 직원,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c)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승선

- d) 도선사, 운항관리자,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선박검사관, 선박검사원 등으로서 선원업무 아닌 업무 하는 자
- e)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소속 직원과 이용자
- f)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선박을 이용해 항만 견학
- g) 다음 운송 차량 화물관리인(장관 고시 안전교육 받은 운전자 포함)
 - 가축, 동물, 살아 있는 수산물
 -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등 폭발, 화재 위험성 높은 위험물
- h) 선박 출항지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 포함) 인정 공익 목적 행사 참여 위해 승선
- i) 해양시설 건설/유지보수/운영 등 해상산업활동 종사

10) 여객선은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1) 소형선박은 법상 측정방법으로 측정된 길이 12m 미만

2) 부선은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 미설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에 의해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

3) 예인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

4) 컨테이너

-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 기계 사용 하역과 견침방식 적재 가능하며,
- 선박이나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고,
-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

5) 산적화물선은 곡물/광물 등 건화물을 산적해 운송하는 선박

6) 하역장치

- 화물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기계 장치
- 선체 구조 등에 항구적으로 붙어있는 것
- 화물은 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 식량, 기관, 선박용품, 작업용 자재 포함

7) 하역장구는 하역장치의 부속품이나 하역장치에 붙여서 사용하는 물품

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 조건부 선체용선

3. 법 적용범위

가. 한국 국민/정부 소유 선박에 적용
(예외)

- 1) 군함, 경찰용 선박
-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해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3) 어선
- 4) 선박검사증서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증서를 장관에 반납한 후 계류한 선박
- 5) 안전검사 받은 수상레저기구
- 6) 2007년 11월 4일 전 건조된 다음 선박
 - a)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추진기관/돛대 미설치 선박
 - 단, 다음은 제외
 - 항만건설작업선

- 압항부선
 - 13명 이상 여객운송
 - 기름/폐기물, 위험물을 산적해 운송
 -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의, 장관 고시 선박
- b) 연해구역 운항 선박추진기관/뚝대 미설치 선박
- 단, 다음은 제외
 - 항만건설작업선
 - 압항부선
 - 여객/화물 운송
 -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의, 장관 고시 선박

나. 다음 외국선박은 법 전부/일부 적용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
-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한 선박

다. 항만국통제는 모든 외국선박에 적용

라. 다음 선박은 법 전부/일부 적용않거나 완화 적용

- 1)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법 적용범위에 관해 협정 체결
- 2) 다음의 긴급한 사정 발생
 - a) 다음 사유로 최대승선인원 초과
 -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 구조
 - 국가, 지자체 소유 선박이 응급환자,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 수송
 - b) 기상 악화, 풍랑 등 불가항력으로 항해구역 벗어남
- 3) 새로운 특징, 형태의 선박 개발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
-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 한번 국제항해

4.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 선박용물건이 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선박시설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 성능 있으면 법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봄

5. 국제협약과의 관계

- 국제항해 선박의 감항성, 인명 안전과 관련해 국제적 발효된 국제협약 안전기준과 법이 다른 때 국제협약 우선
- 예외) 법이 국제협약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포함시

6. 법상 선박 검사, 검정/확인 받으려는 자나 대리인은 **선박 검사 등** 하는 현장 참여 요

- 참여한 자는 검사,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
- 장관은 참여나 협조 않으면 검사, 검정/확인 중지 가능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선박의 검사

7~17조

1. 건조검사

- 가)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해 장관 검사 받음
- 나) 장관은 합격 선박에 건조검사증서 교부
- 다) 합격 선박시설에 대해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라) 장관은 수입 선박 등 건조검사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건조검사에 준하는

별도건조검사 받게 함

- 합격 선박에 건조검사 합격 선박 규정 준용

2. 정기검사

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시 또는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해 장관 검사 받음

- 무선설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 규정에 따라 검사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같음

나) 장관은 정기검사 합격한 선박에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만재흘수선 위치를 지정해 선박검사증서 교부

- 최대승선인원, 선박 길이가 변경된 때 주요 변경내용 기재
변경 사유/날짜는 선박검사증서 비고란에 기재

3. 중간검사

-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장관 검사 받음
- 1종/2종으로 구분
- 장관은 합격 선박에 대해 선박검사증서 검사기록에 검사결과 기재
- 해외수역(한국 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 받을 수 없으면 검사 시기 연기

4. 임시검사

가. 선박소유자는 다음 경우 장관 검사 받음

1) 다음 선박시설 개조/수리

a) 선박 길이, 너비, 깊이, 다음의 선체 주요부 변경으로 선체 강도, 수밀성, 방화성에 영향

- 상갑판 아래 선체, 선루나 기관실위벽 폭로부
- 갑판실 측벽, 정부갑판
- 선루갑판 아래 폭로부 외판
-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

b) 다음 기관 개조/수리

- 기관 성능에 영향 미치는 기관 교체
- 선박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교체
- 선박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성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기관 주요부 개조/수리

c) 타 또는 조타장치 변경으로 선박 조종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

d) 탱크, 펌프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 있는 곳에 설치된 전선로 교체/변경

e) 항만건설장비 설치/변경 등으로 선박 복원성, 항만건설장비 성능에 중대한 영향

2) 선박검사증서 기재 내용 변경

- 예외) 선박소유자 성명/주소, 선박명/선적항 변경 등 선박시설 변경 미수반 경미한 사항 변경

3) 선박 용도 변경

4) 선박 무선설비 새로 설치, 변경

5) 해양사고 등으로 선박 감항성, 인명안전 유지에 영향 우려 있는 선박시설 변경

6) 장관이 선박시설 보완/수리 필요성 인정해 임시검사 내용/시기 지정

7) 선박에 고정 설치되는 선박용물건 새로 설치, 변경

8) 만재흡수선 새로 표시, 변경

9) 복원성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복원성에 영향 미칠 우려 있는 선박용물건 신설,

증설, 교체, 제거, 위치 변경

10) 원자력선 원자로에 연료체 투입, 원자로 안에서 연료체 배치 바꿈

1) 보일러 안전밸브 봉인을 개방해 조정

2) 확인받은 하역설비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지름 변경

3) 승강설비 제한하중, 정원 변경 등

나. 장관은

- 합격 선박에 대해 선박검사증서 검사기록에 검사결과 기재 요

- 선박검사증서 기재 내용 일시 변경을 위해 임시검사 합격 선박에 임시변경증 발급 가능

5. 임시항해검사

가) 정기검사 받기 전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거나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 시운전시 선박 소유자나 건조자는 장관의 선박 항해능력 검사받음

- 외국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선박

나) 장관은 합격 선박에 임시항해검사증서 교부

6. 국제협약검사

가) 국제항해 취항 선박 소유자는 선박 감항성과 인명안전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장관 검사 받음

나) 장관은

- 합격 선박에 국제협약검사증서 교부

- 증서 소유자가 국제협약 위반시 증서 회수, 효력정지, 취소 가능

- 외국정부가 국제협약검사증서 교부요청시 외국선박에 대해 국제협약검사 후 교부

가능

7. 증서 기재사항

가) 건조/선박/임시항해/국제협약 검사증서에

- 선박검사관 성명(대행검사기관이 대행시 선박검사원 성명), 검사완료일, 검사장소, 검사기록 기재

나) 건조/선박/임시항해 검사증서에는 다음 검사 기준일, 검사종류도 기재

8. 도면의 승인 등

-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받으려면 선박 도면에 대해 미리 장관 승인 얻음(승인 얻은 사항 변경시도 같다)

- 장관은 도면이 기준에 적합하면 승인하고 도면에 證印, 도면 승인/변경승인 한 선박검사관 성명, 승인 날짜 사항 표시

- 승인 얻은 자는 승인 얻은 도면과 같게 선박 건조/개조

- 선박소유자는 승인 얻은 도면을 선박에 비치

9. 검사의 준비 등

가. 선박소유자는

-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의 선체두께 측정받음

-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외국에서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 선체두께 측정할 수 없으면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 두께측정업체의 측정 받을 수 있다

나. 장관은 선박 구조/시설/크기/용도, 항해구역 등을 고려해 검사준비, 서류제출 등 전부/일부 완화, 면제

다. 두께측정업체

: 장관이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1) 지정기준

a) 시설/장비(사용권 확보 포함)

- 사무소, 펄스반사법 측정장비

b) 다음 인력 2명 이상

- 초음파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이상이나 동등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선체두께 측정 현장 실무교육 이수 또는

- 선박검사원 1년 이상 종사자

c) 다음 포함 업무규정 갖출 것

- 측정 절차

- 측정위치 선정/식별 등 측정준비

- 측정 업무 감독

-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2) 다음은 지정 취소해야 함

- 거짓/부정으로 지정 받거나 측정

- 폐업

3) 다음은 지정 취소나 6개월내 업무 정지 가능

- 지정기준에 미달

- 사유없이 계속해 1년 이상 업무안함

- 보고/자료제출명령에 불응

4) 지정, 지정 취소, 측정 업무 정지 한 때 고시